대구사이버대학교 교원신규채용지침

(제정 2006.07.07.)
(최종개정 2026.11.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교원임용규정에 의거 교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우수한 교원을 채용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지침에서 “교원” 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임용하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제3조(충원대상결정 및 공고) ①신규교원 충원대상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충원이 필요한 학과(부)는 학과(부)교수회의를 거쳐 초빙분야를 명시하여 교원충원 요구서를 제출한다.
2. 신설학과(부)는 신설학과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초빙분야를 명시하여 교원충원요구서를 제출한다.
3. 초빙분야는 지나친 세분화 또는 포괄화를 지양하여야 하며, 전공특성상 실무 및 실습지도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충원대상 학과(부)와 채용인원은 교원충원요구서에 기초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교원 신규채용 공고는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또는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01.>

제4조(지원서접수) 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한 이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터넷(본교 홈페이지)으로 접수(입력)하여야 한다.

1. 교수초빙지원서(별지서식 1)
2. 연구실적목록(별지서식 2):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예정은 제외)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 A4 1매 분량
4. 최종학위논문 요약본(별지서식 4): A4 1매 분량
5. 대표실적 요약본(별지서식 5): A4 각 1매 분량

제5조(심사절차) 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자격심사
2. 제출서류 검토 <신설 2026.11.01.>
3. 서류심사
4. 기초심사(전공심사와 통합할 수 있음)
5. 전공심사
6. 원격강의심사 <신설 2026.11.01.>
7. 면접심사 <개정 2026.11.01.>
8.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제6조(지원자격심사) ①지원자격심사는 지원자가 지원서에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자의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미공개

③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는 지원자격을 “可”로 한다. 이 때 심사결과 보고서는 「교원신규채용 지원자격심사표」(별지서식 6)에 의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수자격을 갖춘 자
2.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단, 전공특성상 실무 및 실습 지도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접수마감일 기준 교육 및 연구 환산경력(별표 2)의 합이 5년 이상인 자
3.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소정기간의 연구실적이 300점 이상인 자(별표 3 연구실적 양적평가 기준)
5. 동일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지원자격심사 통과자가 3인 미만인 분야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학과의 특성상 다음 단계의 심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⑤지원서 입력착오, 허위입력 또는 실적물 미제출로 인하여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⑥지원자격심사 통과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물접수) ①지원자격심사 통과자는 소정기한 이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단, 우편물은 기한이내 도착분에 한한다.

1. 학위논문: 석·박사 학위논문 각 1권
2. 대표실적 각 1부
3. 연구실적물: 초빙분야와 관련된 학술논문, 학술저서 등 각 1부
4.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5.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6.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 각 1부
7. 외국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1부
8. 전공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③대표실적은 학술논문(국제·국내저명학술지), 학술저서 중 2편을 지원자가 지정하되, 전체 연구실적물이 1편일 경우는 1편만 대표실적으로 지정한다(대표실적은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 모두 가능함)

④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본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되, 국제·국내저명학술지의 인정범위는 학술논문의 발표년월일과 관계없이 현재(교수초빙 접수시작일)의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⑤온라인 게재(e-publish)된 학술논문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제출서류 검토) ①지원서에 입력된 각종 자료와 제출된 연구실적물 및 각종 증명서류를 비교·검토한다.

②미공개

제9조(서류심사) ①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근거로 연구실적의 양 및 질적 수준을 심사한다.

②미공개

③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는「교원신규채용 서류심사표」(별지서식 7)에 의한다.

④서류심사 통과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6.11.01.>

⑤지원서 입력착오, 허위입력 또는 실적물 미제출로 인하여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0조(기초심사) ①기초심사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전공과 초빙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한다.

②심사위원의 구성 다음과 같다.
1. 미공개
2. 지원자의 석·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6.11.01.>
③기초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논문: 초빙분야와 최종학위논문의 일치여부
2. 연구실적: 초빙분야와 학술논문, 학술저서의 일치여부
④기초심사는「교원신규채용 기초심사표」(별지서식 8)에 의한다.
⑤심사위원의 1/2 이상이 전공일치 또는 부분일치로 판정한 경우 전공일치로 한다. <개정 2026.11.01.>
⑥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전공심사) ①전공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한다.
②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전공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적의 양: 박사학위논문(최근 3년 이내의 논문만 인정), 대표실적, 학술논문(국제·국내저명학술지) 및 학술저서(별표 3)
2. 연구실적 질적수준: 최종학위논문 및 대표실적의 초빙분야 일치도와 학문적 우수성
3.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경력의 우수성
4. 현장실무경력: 현장실무경력의 우수성
5. 과제 수행경력: 연구비수탁실적, 과제의 수행건수 및 중요도 등
6. 학위이수과정: 학부, 석·박사과정의 초빙분야와의 일치성 <신설 2026.11.01.>
④전공심사는 「교원신규채용 전공심사표」(별지서식 9)에 의한다.
⑤심사위원은 「교원신규채용 전공심사표」에 심사결과를 기록 후 주관부서에 인비로 제출한다.

제12조(면접대상자 선정) ①면접대상자 선정은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다만, 제15조의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공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우선한다.
②면접대상자는 초빙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한다.
[조신설 2026.11.01.]

제13조(원격강의심사) ①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원격강의심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미공개
③원격강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강의내용의 전문성
2. 강의구성 및 체계성
3. 강의전달력
4. 원격강의 매체활용
5. 학습자 상호작용 및 참여유도
6. 원격교육 적합성
④원격강의심사의 세부 방법,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도의 원격강의 심사표에 따른다.
⑤심사대상자에게는 강의방법, 심사방법, 심사내용 및 제출자료 등을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⑥원격강의심사는「원격강의 심사표」(별지서식 10)에 의한다.
[조신설 2026.11.01.]

제14조(면접심사) ①미공개
②면접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교육철학
2. 교원으로서의 품성 및 의사소통 능력

3. 대학 및 학과발전에의 기여도
4.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이해도
5. 전공분야의 전문성 및 교육·연구 수행역량

③면접심사는 면접심사조서(별지서식 10)에 의한다.

④면접심사에 불참한 자는 신규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동안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위원회) ①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원격강의심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②미공개

③재심위원회는 초빙 학과(부)장,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제청예정자 결정) 총장은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제청예정자를 선정한다. 기초심사는 전공일치 여부를 판정하며, 심사별 반영비율은 전공심사 40%, 원격강의심사 20%, 면접심사 40%를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심사의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신설 2026.11.01.>

③신규임용 교원의 직급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며, 최종 임용은 「교원임용규정」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6.11.01.>

제17조(특별채용) ①특별채용분야 및 인원은 대학특성화분야, 해당학과(부)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과(부)장의 요청에 의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특별채용의 심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동일교 제한) ①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제19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심사위원 배제) 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2. 지원자와 논문 및 저서의 공저자
3. 그 밖에 지원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조신설 2026.11.01.]

제20조(심사결과 공개) 교원채용 심사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자가 심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또는 본 대학교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6항) <개정 2026.11.01.>

제21조(보칙) ①교원채용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현재 재직중인 총장계약제 교원을 이사장 신규임용 전환할 때의 연구실적 인정범위는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실적과 학술논문(국제일반, 국내일반), 학술회의발표논문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

1. 교육경력

류 별	환산율	경 력 종 별	비 고
제1류	100%	학력을 인정받는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2류	8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대우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강의전담교수
제3류	7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강의조교로 근무한 경력(대학 총·학장 발령)	
제4류	50%	고등학교 이하의 교사 경력	
	5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주당 5시간 이상) 등

2. 연구경력·현장실무경력

류 별	환산율	경 력 종 별	비 고
제1류	100%	석·박사 학위과정(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비전임 70% 비연구기관 70%
제2류	80%	전공과 관련된 1개 이외의 동일 학위에 대한 경력(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류	70%	실무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비전임 50%
	70%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연구조교(연구원)로 근무한 경력(대학 총·학장 발령)	유급·전임조교(연구원)
제4류	50%	제1~3류 외의 근무 경력	행정조교 무급·전임조교(연구원) 자체조교(기관장발령)

[별표 3]

연구실적 양적평가 기준

1. 연구실적물 양적평가

가. 적용: 서류심사(배점 30점), 전공심사(배점 25점)

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박사학위논문(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만 인정), 대표실적,학술논문(국제·국내저명학술지), 학술저서

다. 연구실적물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물만 인정

라. 연구실적물 실적점수 계산방법

1) 전공심사에서는 인정점수(실적물간 중복되거나 초빙분야와 관련없는 실적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2) 실적점수는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2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자수 및 책임/공동 여부에 따라 인정환산율을 적용함.

- 책임연구자: 2/(n+1) × 실적물점수(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2의 점수)
- 공동연구자: 1/(n+1) × 실적물점수(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2의 점수)

[단, 학술저서(단행본)는 1/n × 실적물점수(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2의 점수)로 함]

※ n=연구자수(연구자수가 10인 이상일 경우 n=10으로 함)

※ 책임저자: 주저자, 교신저자(확인 불가능시 공동저자로 인정함)

※ 실적점수 산정 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마.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평가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평점	인 정 범 위
학술논문	국제저명학술지	SSCI A&HCI	300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및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SCI	250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SCIE	200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된 학술지
		SCOPUS	200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다만, Document type이 Article-in Press, Conference paper,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 Editorial, Letter, Note는 제외)
	국내저명학술지		15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2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학술저서 (단행본)	국외학술저서		200	외국어로 출판된 전공분야 학술저서 및 전공교재
	국내학술저서		150	국내에서 출판된 전공분야 학술저서 및 대학이상의 강의를 위한 전공교재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200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박사학위논문

2. 연구실적 양적평가 기준표: 미공개